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7호 2020. 7. 6(월)

고 시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2020 - 193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9-152호(2019. 7. 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과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6.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가. 당초

- 대양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호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6번길 12-20(대양동))
-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해수유입시설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목포시장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나. 변경

- 대양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재 료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6번길 12-20(대양동))
-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해수유입시설, 단지 내 도로 등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목포시장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내 산업 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변경)

1) 유치업종 (변경)

○ 기정

- C10 : 식료품 제조업, C12 : 담배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C1392 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변경

- C10 : 식료품 제조업, C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C1392 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_산업용지7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2)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_(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변경)

구분	면적(㎡)			분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산업1	54,474.8	54,474.8	-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2	58,934.9	58,934.9	-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3	31,343.0	31,343.0	-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4	81,121.9	81,121.9	-	C10 : 식품제조업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10 : 식품제조업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5	48,154.7	48,154.7	-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6	81,854.7	76,068.1	감)5,786.6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7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C17902),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7	90,903.0	90,903.0	-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8	89,333.7	89,333.7	-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제한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9	54,997.6	54,997.6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구분	면적(㎡)			분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0	54,548.9	54,548.9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1	46,227.1	46,227.1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2	20,292.3	20,292.3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3	33,767.8	33,767.8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4	48,332.2	48,332.2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5	17,079.9	17,079.9	-	C12 : 담배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6	42,798.4	42,798.4	-	C12 : 담배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합 계	854,164.9	848,378.3	감)5,786.6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1,545,006.8	1,545,006.8	-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854,164.9	848,378.3	감) 5,786.6	55.3	54.9	감)0.4	
지원시설용지	92,186.8	92,186.8	-	6.0	6.0	-	
공공시설용지	597,785.8	603,572.4	증) 5,786.6	38.6	39.0	증)0.4	
도로	264,259.4	270,552.6	증) 6,293.2	17.1	17.6	증)0.5	
주차장	9,277.0	9,277.0	-	0.6	0.6	-	
지동차정류장	91,476.9	91,476.9	-	5.9	5.9	-	
공공청사	21,873.8	21,367.2	감) 506.6	1.4	1.3	감)0.1	
오수중계펌프장	500.0	500.0	-	-	-	-	
공원	51,306.7	51,306.7	-	3.3	3.3	-	
원충녹지	19,975.3	19,975.3	-	1.3	1.3	-	
경관녹지	139,116.7	139,116.7	-	9.0	9.0	-	
기타시설용지	869.3	869.3	-	0.1	0.1	-	
해수유입시설	187.4	187.4	-	-	-	-	
제방	681.9	681.9	-	0.1	0.1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 면 적 : 1,545,006.8㎡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대양일반산업단지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2009. 09. 18.(실시계획승인일) ~ 2018년

나.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해수유입시설, 단지내 도로 등

- 시행방법 : 목포시
- 시행기간 : 당초 : 2009. 09. 18.(실시계획승인일) ~ 2018년.
변경 : 2009. 09. 18.(실시계획승인일) ~ 2021. 12. 말까지.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545,006.8	-	1,545,006.8	100.0	
도시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일반공업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산단 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대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1,545,006.8	-	1,545,006.8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0	12,263.0	264,259.4	11	5,296.0	114,296.0	5	3,116.0	76,695.9	14	3,851.0	73,267.5	
	변경	32	12,806.0	270,552.6	11	5,296.0	114,296.0	6	3,177.0	77,202.5	15	4,333.0	79,054.1	
	증감	증)2	증)543.0	증)6,293.2	-	-	-	증)1	증)61.0	증)506.6	증)1	증)482.0	증)5,786.6	
대로	기정	4	4,699.0	149,184.6	1	850.0	33,826.8	1	1,789.0	59,705.3	2	2,060.0	55,652.5	
중로	기정	13	5,473.0	97,946.9	7	3,435.0	70,531.2	2	851.0	12,940.9	4	1,187.0	14,474.8	
	변경	14	5,955.0	103,733.5	7	3,435.0	70,531.2	2	851.0	12,940.9	5	1,669.0	20,261.4	
	증감	증)1	증)482.0	증)5,786.6	-	-	-	-	-	-	증)1	증)482.0	증)5,786.6	
소로	기정	13	2,091.0	17,127.9	3	1,011.0	9,938.0	2	476.0	4,049.7	8	604.0	3,140.2	
	변경	14	2,152.0	17,634.5	3	1,011.0	9,938.0	3	537.0	4,556.3	8	604.0	3,140.2	
	증감	증)1	증)61.0	증)506.6	-	-	-	증)1	증)61.0	증)506.6	-	-	-	

※ 주 : 국도 1호선 우회도로(대로 1-7호선)의 경우 총 연장 4,540m 중 지구내 연장은 850m임
 소로 1-110호선의 경우 총 연장 224m 중 지구내 연장은 53m임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대로1류)		1개 노선			4,540 (850)						()는 구역내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4,540 (850)	대1-6 연산동 64-9도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1074-31 도	일반 도로	대양 근린 공원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국도1호선 우회도로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계 (대로2류)		1개 노선			1,789						
기정	대로	2	19	30	보조 간선	1,789	대로1-7	대로2-2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소계 (대로3류)		2개 노선			2,060						
기정	대로	3	32	25	보조 간선	1,646	대로2-19	중로2-7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대로	3	33	25	보조 간선	41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1류)		7개 노선			3,435						
기정	중로	1	74	20	집산 도로	1,118	대로2-19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중로	1	75	20	집산 도로	175	대로2-19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494	대로2-19	대로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7	20	집산 도로	117	대로2-19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8	20	집산 도로	1,07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9	20	집산 도로	257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0	20	집산 도로	200	대로3-32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2류)		2개 노선			851						
기정	중로	2	70	15	국지 도로	250	대로3-32	소로3-39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2	71	15	국지 도로	601	중로2-70	대로3-32	일반 도로		〃	
변경	소계 (중로3류)		5개 노선			1,669						
기정	중로	3	93	12	국지 도로	98	소로1-302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3	94	12	국지 도로	456	중로3-93	대로2-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5	12	국지 도로	611	중로3-95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6	12	국지 도로	22	중로3-95	대로2-19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110	12	국지 도로	482	중로1-78	중로1-78	일반 도로			금회신설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소로1류)		3개 노선			1,182 (1,011)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 도로	224 (53)	대1-6 용해동 578도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7-80호 (1987. 6. 5)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1	302	10	국지 도로	460	소로1-110	중로3-9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1	304	10	국지 도로	498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변경	소계 (소로2류)		3개 노선			537						
기정	소로	2	663	8	국지 도로	135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 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기정	소로	2	664	8	국지 도로	341	중로2-70	중로2-70	일반 도로		목포시 고시 제2017-99호 (2017. 06. 08)	
신설	소로	2	679	8	국지 도로	61	소로2-664	대양산단 남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금회신설
기정	소계 (소로3류)		8개 노선			604						
기정	소로	3	398	6	국지 도로	28	중로2-70	대양산단 서측지 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399	6	국지 도로	87	중로3-93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3	400	6	국지 도로	39	소로1-302	소로3-3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1	4	특수 도로	247	중로1-74	경관녹지56	보행자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402	4	특수 도로	103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 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3	4	특수 도로	56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 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4	4	특수 도로	16	소로1-302	대양산단 동측지 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82	6	국지 도로	28	대양산단 남측 지구계	소로1-30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중로 3-110	°신설 - L=482m, B=12m	° 산업시설용지⑥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내부 도로개설
신설	-	소로 2-679	°신설 - L=61m, B=8m	° 삼진, 산정농공단지에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삼진항 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공청사33으로 도로개설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277.0	-	9,277.0	-	-
기정	80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6-2차	2,934.3	-	2,934.3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81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7-3차	651.7	-	651.7	〃	〃
기정	102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8-5차	3,969.6	-	3,969.6	〃	〃
기정	103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2-1차	555.6	-	555.6	〃	〃
기정	104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4-2차	1,165.8	-	1,165.8	〃	〃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91,476.9	-	91,476.9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3차	28,511.0	-	28,5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6차	62,965.9	-	62,965.9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에 따른 목포시장이 설치하는 공용차고지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95,444.0 (159,092.0)	-	195,444.0 (159,092.0)		()는 구역내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49공 일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 도로변	56,327.3 (19,975.3)	-	56,327.3 (19,975.3)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54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38공 일원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15,677.3	-	15,677.3	전남고시 제2009-372호 (2009.9.18)	〃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10공 일원	14,953.7	-	14,953.7	〃	〃
기정	56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1공 일원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35,643.4	-	35,643.4	〃	〃
기정	57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7공 대양산단 북측지구계	2,426.9	-	2,426.9	〃	〃
기정	58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9공 일원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37,285.5	-	37,285.5	〃	〃
기정	59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0공 일원 대양 일반산업단지내 송전탑 선하부지	33,129.9	-	33,129.9	〃	〃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306.7	-	51,306.7	-	-
기정	127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222공	18,808.0	-	18,808.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128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81-4공	18,287.7	-	18,287.7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기정	129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93-8공	14,211.0	-	14,2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873.8	감) 506.6	21,367.2		
기정	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3대 일원	4,000.0	-	4,000.0	전라남도 고시 제 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1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864.1	-	5,864.1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변경	33-2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6,858.2	감) 487.7	6,370.5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변경	3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151.5	감) 18.9	5,132.6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공공청사 33-2	○변경 - 6,858.2㎡ → 6,370.5㎡ 감)487.7㎡	○ 삼진, 산정농공단지에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로2-679호선 개설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공공청사 33-3	○변경 - 5,151.5㎡ → 5,132.6㎡ 감)18.9㎡	○ 삼진, 산정농공단지에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로2-679호선 개설에 따른 면적 변경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오수중계 펌프장	목포시 대양동 1179-8잡	500	-	500	전남고시 제2010-323호 (2010.11.5)	대양일반 산업단지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12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808.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363.0	-	-	7.24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445.0	-	-	92.75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808.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363.0	-	-	-	
		도 로	1,363.0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	
		휴게쉼터2	-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445.0	-	-	-	
		녹 지	17,445.0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445	1,363.0	-	-	-	
소 로	진1	3	269	809.0	진입로	대상지경계	대상지경계	
〃	진2	3	176	554.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로1	

2) 1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287.7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225.0	-	-	6.7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062.7	-	-	93.3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287.7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225.0	-	-	-	
		도 로	852.0	-	-	-	
		광 장	373.0				
휴양 시설	소 계		132.0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휴게쉼터3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062.7	-	-	-	
		녹 지	17,062.7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			214	852.0				
소 로	진1	4	214	852.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광장	

3) 1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4,211.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075.0	-	-	7.6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3,136.0	-	-	92.4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4,211.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874.0	-	-	-	
		도 로	874.0	-	-	-	
		광 장	201.0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1)	등의자	-	8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소 계		13,136.0	-	-	-	
		녹 지	13,136.0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73.0	874.0				
소 로	진1	3.0	11.0	33.0	진입로	대상지경계	광장	
〃	산1	2.0	262.0	841.0	산책로	광장	산책로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산업1	-	54,474.8	54,474.8	-	1	14,915.7	14,915.7	-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13,216.8	13,216.8	-	
					3	13,352.8	13,352.8	-	
					4	6,500.0	6,500.0	-	
					5	6,489.5	3,863.2	감)2,626.3	
					6	-	2,626.3	증)2,626.3	
산업2	-	58,934.9	58,934.9	-	1	7,935.2	7,935.2	-	
					2	9,772.6	9,772.6	-	
					3	5,868.3	5,868.3	-	
					4	6,654.8	6,654.8	-	
					5	5,163.4	5,163.4	-	
					6	5,768.0	5,768.0	-	
					7	4,714.7	4,714.7	-	
					8	4,861.7	4,861.7	-	
					9	4,155.4	4,155.4	-	
					10	4,040.8	4,040.8	-	
산업3	-	31,343.0	31,343.0	-	1	6,567.0	6,567.0	-	
					2	6,613.0	6,613.0	-	
					3	6,657.3	6,657.3	-	
					4	3,839.1	3,839.1	-	
					5	2,642.2	2,642.2	-	
					6	2,646.2	2,646.2	-	
					7	2,378.2	2,378.2	-	
산업4	-	81,121.9	81,121.9	-	1	12,291.1	12,291.1	-	
					2	12,076.8	12,076.8	-	
					3	12,205.2	12,205.2	-	
					4	12,277.3	12,277.3	-	
					5	12,136.1	4,297.0	감)7,839.1	
					6	11,055.7	11,055.7	-	
					7	9,079.7	4,628.1	감)4,451.6	
					8	-	7,839.1	증)7,839.1	
					9	-	4,451.6	증)4,451.6	
산업5	-	48,154.7	48,154.7	-	1	2,943.1	2,943.1	-	
					2	2,915.8	2,915.8	-	
					3	6,124.4	6,124.4	-	
					4	4,779.7	4,779.7	-	
					5	10,845.1	10,845.1	-	
					6	10,182.4	10,182.4	-	
					7	10,364.2	10,364.2	-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산업6	-	81,854.7	76,068.1	감)5,786.6	1	16,583.3	4,086.5	감)12,496.8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16,666.9	3,914.9	감)12,752.0	
					3	20,675.9	3,987.7	감)16,688.2	
					4	6,914.1	6,914.1	-	
					5	6,915.5	6,915.5	-	
					6	7,048.8	5,229.2	감)1,819.6	
					7	7,050.2	5,125.4	감)1,924.8	
					8	-	4,215.0	증)4,215.0	
					9	-	4,681.9	증)4,681.9	
					10	-	3,564.0	증)3,564.0	
					11	-	3,218.0	증)3,218.0	
					12	-	3,203.4	증)3,203.4	
					13	-	3,267.0	증)3,267.0	
					14	-	5,450.6	증)5,450.6	
					15	-	8,550.5	증)8,550.5	
					16	-	3,744.4	증)3,744.4	
산업7	-	90,903.0	90,903.0	-	1	4,471.0	4,471.0	-	
					2	4,471.3	4,471.3	-	
					3	8,929.9	5,289.3	감)3,640.6	
					4	8,883.7	7,235.0	감)1,648.7	
					5	8,910.6	3,951.9	감)4,958.7	
					6	4,891.9	4,891.9	-	
					7	4,738.4	4,738.4	-	
					8	4,470.3	2,670.3	감)1,800.0	
					9	4,467.9	4,467.9	-	
					10	8,820.3	8,820.3	-	
					11	8,993.9	8,993.9	-	
					12	8,962.9	8,962.9	-	
					13	4,892.4	4,892.4	-	
					14	4,998.5	4,998.5	-	
					15	-	5,289.3	증)5,289.3	
					16	-	4,958.7	증)4,958.7	
					17	-	1,800.0	증)1,800.0	
산업8	-	89,333.7	89,333.7	-	1	4,891.4	4,891.4	-	
					2	4,877.9	4,877.9	-	
					3	8,600.8	7,244.8	감)1,356.0	
					4	8,560.1	4,958.2	감)3,601.9	
					5	8,593.6	4,957.9	감)3,635.7	
					6	8,684.0	8,684.0	-	
					7	5,248.6	5,248.6	-	
					8	5,218.0	5,218.0	-	
					9	8,695.3	4,958.5	감)3,736.8	
					10	8,657.9	4,959.6	감)3,698.3	
					11	8,630.9	5,487.7	감)3,143.2	
					12	8,675.2	8,675.2	-	
					13	-	4,296.1	증)4,296.1	
					14	-	4,297.5	증)4,297.5	
					15	-	5,289.1	증)5,289.1	
					16	-	5,289.2	증)5,289.2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산업9	-	54,997.6	54,997.6	-	1	6,965.4	3,482.7	감)3,482.7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6,986.8	5,689.8	감)1,297.0	
					3	6,967.5	6,967.5	-	
					4	3,180.5	3,180.5	-	
					5	3,132.1	3,132.1	-	
					6	7,012.4	7,012.4	-	
					7	7,176.3	7,176.3	-	
					8	7,197.2	7,197.2	-	
					9	3,253.5	3,253.5	-	
					10	3,125.9	3,125.9	-	
					11	-	4,779.7	증)4,779.7	
산업10	-	54,548.9	54,548.9	-	1	3,099.2	3,099.2	-	
					2	3,113.5	3,113.5	-	
					3	6,861.8	6,861.8	-	
					4	6,869.7	6,869.7	-	
					5	6,837.2	6,837.2	-	
					6	3,217.5	3,217.5	-	
					7	3,290.6	3,290.6	-	
					8	7,175.2	7,175.2	-	
					9	7,064.3	7,064.3	-	
					10	7,019.9	7,019.9	-	
산업11	-	46,227.1	46,227.1	-	1	7,797.2	7,797.2	-	
					2	7,861.7	7,861.7	-	
					3	7,323.3	7,323.3	-	
					4	7,725.1	7,725.1	-	
					5	7,995.7	7,995.7	-	
					6	4,076.6	4,076.6	-	
					7	3,447.5	3,447.5	-	
산업12	-	20,292.3	20,292.3	-	1	4,086.6	4,086.6	-	
					2	4,078.9	4,078.9	-	
					3	4,034.3	4,034.3	-	
					4	4,051.1	4,051.1	-	
					5	4,041.4	4,041.4	-	
산업13	-	33,767.8	33,767.8	-	1	11,354.1	11,354.1	-	
					2	11,830.1	11,830.1	-	
					3	10,583.6	10,583.6	-	
산업14	-	48,332.2	48,332.2	-	1	4,478.1	4,478.1	-	
					2	9,891.0	9,891.0	-	
					3	8,962.0	8,962.0	-	
					4	7,785.1	7,785.1	-	
					5	5,218.6	5,218.6	-	
					6	4,337.0	4,337.0	-	
					7	3,913.0	3,913.0	-	
					8	3,747.4	3,747.4	-	
산업15	-	17,079.9	17,079.9	-	1	8,345.7	8,345.7	-	
					2	8,734.2	8,734.2	-	
산업16	-	42,798.4	42,798.4	-	1	14,225.8	7,113.0	감)7,112.8	
					2	14,241.6	14,241.6	-	
					3	14,331.0	14,331.0	-	
					4	-	7,112.8	증)7,112.8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지원1	-	5,142.9	1	603.0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624.1	
			3	624.4	
			4	740.7	
			5	696.9	
			6	623.7	
			7	624.4	
			8	605.7	
지원2	-	3,816.4	1	532.7	
			2	534.8	
			3	1,646.4	
			4	574.3	
			5	528.2	
지원3	-	13,566.0	1	1,470.1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1,479.7	
			3	1,875.2	
			4	1,874.9	
			5	1,862.6	
			6	1,873.5	
			7	1,866.8	
			8	1,263.2	
지원4	-	11,919.0	1	1,452.6	
			2	1,824.0	
			3	8,642.4	• 분할 가능 (단 2필지) • 합병 가능
지원5	-	9,907.5	1	72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723.1	
			3	720.5	
			4	719.4	
			5	719.1	
			6	498.6	
			7	498.6	
			8	661.4	
			9	662.3	
			10	661.5	
			11	663.8	
			12	661.4	
			13	667.3	
			14	663.3	
			15	663.3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지원6	-	3,385.2	1	1,05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1,027.7	
			3	801.1	
			4	502.5	
지원7	-	4,561.4	1	1,175.0	
			2	1,181.7	
			3	1,180.3	
			4	1,024.4	
지원8	-	4,821.5	1	231.7	
			2	231.9	
			3	232.1	
			4	231.8	
			5	231.5	
			6	232.6	
			7	234.0	
			8	234.0	
			9	233.6	
			10	233.9	
			11	233.5	
			12	232.2	
			13	338.7	
			14	331.9	
			15	333.2	
			16	333.5	
			17	229.7	
			18	231.2	
			19	230.5	
지원9	-	8,524.7	1	1,086.9	• 분할 가능
			2	1,552.9	
			3	1,503.7	
			4	1,505.3	
			5	1,491.8	
			6	1,384.1	
지원10	-	17,092.3	1	1,911.6	• 분할 가능
			2	1,900.0	
			3	1,874.5	
			4	6,510.7	
			5	4,895.5	
지원11	-	9,449.9	1	1,180.1	• 분할 가능
			2	1,186.3	
			3	1,186.0	
			4	1,184.5	
			5	1,178.6	
			6	1,186.0	
			7	1,186.0	
			8	1,162.4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9,277.0	-	9,277.0	
주80	-	2,934.3	-	2,934.3	
주81	-	651.7	-	651.7	
주102	-	3,969.6	-	3,969.6	
주103	-	555.6	-	555.6	
주104	-	1,165.8	-	1,165.8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오수12	-	500	-	500	

5)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91,476.9	-	91,476.9	
자동차정류장6	-	28,511.0	-	28,511.0	
자동차정류장7	-	62,965.9	-	62,965.9	

6) 공공청사(변경)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계		21,873.8	21,367.2	감)506.6	-	21,873.8	21,367.2	감) 506.6	
청사33	-	4,000.0	4,000.0	-	-	4,000.0	4,000.0	-	
청사33-1	-	5,864.1	5,864.1	-	-	5,864.1	5,864.1	-	● 합병 가능
청사33-2	-	6,858.2	6,370.5	감) 487.7	-	6,858.2	6,370.5	감) 487.7	
청사33-3	-	5,151.5	5,132.6	감) 18.9	-	5,151.5	5,132.6	감) 18.9	

7) 해수유입시설(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187.4	-	187.4	
해수1	-	100.0	-	100.0	
해수2	-	87.4	-	87.4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4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6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장>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변경> · C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r><td>강조색</td><td>5G 3/4</td><td></td><td>5GY 3/4</td><td></td></tr></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5, 7, 8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공장으로서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심사를 득한 업종으로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 - 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C1392곤,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변경 :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용지 7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 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9, 10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계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5G 3/4</td><td></td><td>5GY 3/4</td><td></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1, 12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보조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r><td>강조색</td><td>5G 3/4</td><td colspan="3">5GY 3/4</td></tr></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4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r><td>강조색</td><td>5G 3/4</td><td colspan="3">5GY 3/4</td></tr></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5, 16	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장> · C12 : 담배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변경>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 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피크를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r><td>강조색</td><td>5G 3/4</td><td></td><td>5GY 3/4</td><td></td></tr></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7, 9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소형형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tr> <td>주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 </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8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의 경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하)					
		높이/세대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6세대 이하)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0, 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주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 <tr> <td rowspan="2">보조색</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 <tr> <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 </table>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10BG 4/4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10BG 4/4		5B 3/2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주80~81, 102~10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 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오수 중계 펌프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오수1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5) 자동차 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자동차 정류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자동차정류장 6~7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강조색	5G 3/4			5GY 3/4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공공청사33, 33-1, 33-2, 33-3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7) 해수유입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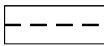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해수유입 시설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해수1, 2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취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강조색	10BG 4/4		5B 3/2

사.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산업1~16	획지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필지가 되도록 한다. •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은 1,650㎡이상 되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	기본 원칙	• 건축물의 재료, 형태,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원칙으로 함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형광색 등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며 사용가능한 색의 수를 4색 이내로 제한		
			가로형 간판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기본형으로 함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요 도로에 접한 입면의 상단부의 적정 위치에 설치 • 간판 조명은 채널방식으로 LED를 사용하여 단색으로 설치 • 조명은 백색 광원을 기준으로 하며 점멸 등 효과 금지		
			지주 이용 간판	•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지원1~11	획지 분할 및 합병	- 지원시설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건축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 지원10BL 및 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제외) - 획지의 합병은 인접대지에 대하여 합병할 수 있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획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단 2필지) - 도면표시 : 대지분할가능선 				
		옥외 광고물	<table><tr><td>가로형 간판</td><td>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r><td>돌출형</td><td>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able>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목포시 건축조례 기준에 의한다.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도 : 게재생략

7.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나.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 사업준공 완료(2017년 4월 27일)로 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목포시청(기업유치과 061-270-42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